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 〉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44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 및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반환된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종료일 1개월 전 이용자 보호 절차에 관한 계획 작성 및 금융위원회 제출, 영업종료 사실 및 가상자산 출금 방식·출금 기간 등의 공시 및 통지, 영업종료 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위한 조치, 조치기간 도과 후 가상자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지정기관 이전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의2(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절차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 방식 및 출금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가상자산을 보관 중인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현행	개정안
	<u>치하여야 한다.</u> ④ <u>가상자산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기록 등 이용자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전하여야 한다.</u>

□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2025. 5. 21.)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시장의 경우 4,989조원(코인게코 기준), 국내 시장의 경우 107.7조원(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기준) 수준임.
- 가상자산 이용자와 거래규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970만명, 일평균 거래규모는 7.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표1]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시장 주요현황

구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6.0조원	7.3조원	+1.3조원(+22%)
총영업손익	5,900억원	7,415억원	+1,602억원(+28%)
원화예치금	5.0조원	10.7조원	+5.7조원(+114%)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55.3조원	107.7조원	+51.2조원(+91%)
가상자산 종목 수	1,207개	1,357개	+150개(+12%)
- 중복상장 제외시	554종	598종	+44종(+7.9%)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285개	287개	+2개(+0.7%)
가격변동성 ((최고가-최저가)/최고가)	70%	68%	△2%p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778만명	970만명	+192만명(+25%)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567만명	684만명	+118만명(+21%)

주1: (조사대상) 25개 가상자산사업자(17개 거래소(거래업자), 8개 지갑·보관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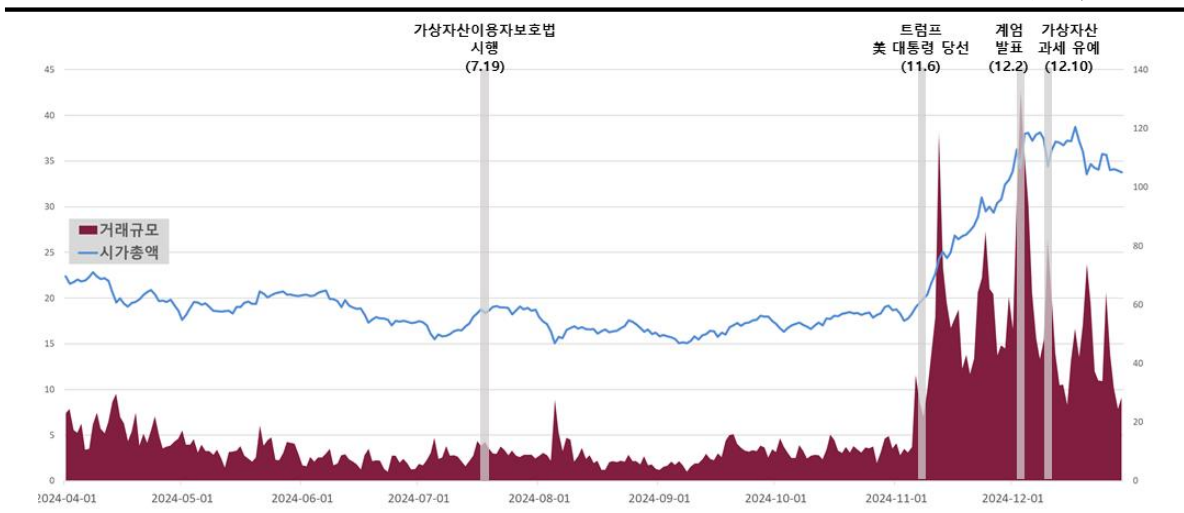
주2: (조사방법)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주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024. 7. 1. ~ 2024. 12. 31. / 2024. 12. 31.

(자료: 금융위원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표2] 2024년 4월~1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금융위원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 한편,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는 별개로,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

른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로 인한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 마련 지원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음.¹⁾

-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① **영업종료 확정 전**에는 영업종료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② **영업종료 확정 후**에는 영업종료 관련 공지, 이용자 신규 회원가입 종료,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의 보존·파기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24년 5월 10개의 영업종료·중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²⁾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4. 6.

[표 3]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I. 영업종료 확정 前(평상시)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 (내규) 마련·운영	○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내규) 마련·운영 *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출금대상 사업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상세 작성 ○ 영업종료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II. 영업종료 확정 後	
금융당국 보고	○ <u>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금융당국에 영업종료 예정 사실 보고</u> ○ <u>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 제출</u>
영업종료 관련 공지	○ <u>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홈페이지 등에 영업종료 사실 공지</u> ○ <u>개별 회원</u>(휴면회원 포함)에게 전화 등을 사용하여 <u>공지 내용을 안내</u>
신규 회원가입 등 중단	○ 공지 이후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예치금·가상자산 입금 즉시 중단 ○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 지체없이 반환 처리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 <u>영업종료일 이후 3개월 이상(정상 출금기간) 영업 당시와 동일방식으로 이용자 소유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u> ○ 공지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출금 안내 ○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 지원 ○ 정상 출금기간 중 영업 당시와 동일방식의 출금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부과, 그 이후에도 과도한 출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 ○ 출금 미요구 이용자 현황 파악 및 지속적 안내
회원정보 등 보존 및 파기	○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보존, 이에 미해당하거나 보존기간 도과 개인정보는 파기
이용자 자산 관리 강화	○ <u>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 미반환 이용자 자산은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u> ○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 ○ 예치금이 있는 경우, 예치금 관리기관에 영업종료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기관의 예치금 출금 통제 정책에 적극 협조 ○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
변경신고	○ 영업종료 후에도 FIU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 이행
기타	○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 유지 및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 담당 책임자 지정 ○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 마련 ○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 ○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관한 처리 절차 마련 ○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하여 고객센터 등 연락처 안내

□ 개정안은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현재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①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이용자 보호 절차에 관한 계획 작성 및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② 영업종료일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 방식·출금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가상자산을 보관 중인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한편, ③ 이용자에게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치금·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규율하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 한편, 안 제9조의2제4항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출금 지원을 위한 조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 기록 등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지체없이 이전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기존 가이드라인상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보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보임.

□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

자산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 보호의 강화 및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지 않음.
-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정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제15조³⁾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

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① 영업종료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②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종료 시 과태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③ 개정안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 통보·고발의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증권회사가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이를 승인하려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⁵⁾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승인·보고의 기준·방법, 그 밖의 승인·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 또한, 영업을 종료하려는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는

각각 「의료법」 6), 「노인복지법」 7) 등에 따라 폐업신고 및 환자

금에 처한다.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법 제417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5. 내용과 절차가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6. 그 밖에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투자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 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과 심사,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4. (생략)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시설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신고의 수리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영업을 종료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절차상 의무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유사 입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7) 「노인복지법」

제40조(변경·폐지 등)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6. 7.>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장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례를 참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 부과 및 금융당국의 이용자 보호 조치사항 확인 의무 부여,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 영업종료 절차 관련 유사 입법례

구 분	가상자산사업자	증권회사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근거 법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 자본시장법	○ 의료법	○ 노인복지법
진입 규제 유형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인가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영업 종료 절차	○ FIU 직권말소	○ 증권사 승인신청 → 금융위 심사 → 금융위 승인 → 증권회사 폐지 공고	○ 개설자 폐업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수리	○ 설치한 자 폐업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수리
권익 보호 조치	○ (현행법) 없음 ○ (개정안) - 이용자 보호 절차 관련 계획 작성 및 금융위 제출 - 영업종료 사실, 가상자산 출금 방식·기간 등의 공시·통지 -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위한 조치 - 가상자산 등의 지정기관 이전	○ 투자자 보호 지장 초래 여부 심사 ○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부 승인 가능	○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 등	○ 해당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제재 수단	○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 미승인 폐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폐지 미공고 : 1억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둘째, 개정안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거래기록 등을 이전하여야 하는 지정기관의 요건, 지정기관의 가상자산과 거래기록 보관방법, 지정기관의 이용자 가상자산 지급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일 3개월 이후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만큼, 이용자의 가상자산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기관의 이용자 가상자산 지급의무 등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지정기관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이 법 제6조⁸⁾는 예치금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말소 등의 경우 이용자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가상자산사업자 퇴출
관련 내용은 진입규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실상 진입규제로서의 신고, 신고의 수리
거부, 신고의 직권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⁹⁾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업무의 범위를 세분화¹⁰⁾한 진입·영업행위 규제¹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률안을 2025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¹²⁾이므로, 2단계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이 개정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11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現 가상자산거래소·보관업 중심에서 매매·중개·보관 등 업무범위 세분화
- 11) 가상자산사업자 업무범위 세분화,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행위규제 마련
-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 1. 14.